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7
----------	-----

제출연월일 : 2005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와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토관리의 기본방향 설정 및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추진(안 제2조 내지 제5조)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내지 제13조, 제16조 내지 제20조)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를 3개분과위원회에서 2개분과위원회로 축소(안 제14조)
-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색채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근거 마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련법령 발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13조, 제116조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도시계획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또는 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①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7조(용도지구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농·수산업지구 : 농·어·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계(市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건축 그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시·군조례에 의한다.

제4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도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 또는 농림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찬·반 발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의결방법)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과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제2분과위원회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14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 임기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위원회) ①법 제30조제3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며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이상이어야 한다.
- ③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및 여비) ①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21조(설치 및 기능)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현안사업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3. 지역개발행정 등 추진에 따른 분쟁조정 및 대안설정
4. 택지개발 등 도시내 개발사업에 관한 검토·자문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 소속 공무원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위원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2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인사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요구 등)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5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도시계획의 결정)을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또는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 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 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 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

관계법령 발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 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게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114조(운영세칙)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수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로 할 것

제111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수당) ①각종 위원회(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6.11)